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3258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5.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4, 5, 6 기재 각 세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각 세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0년 취득세 등 신고·납부 경위

1) 원고는 2010. 3. 6. [redacted]구 B 전 281㎡, C 전 69㎡, D 전 98㎡, E 대 28㎡, F 대 9㎡, G 대 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0. 4.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호에 규정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경감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50%가 경감된 토지분 등록세 50,572,500원, 지방교육세 10,114,500원, 농어촌특별세 10,114,50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5. 3. 50%가 경감된 토지분 취득세 16,857,500원, 농어촌특별세 5,057,25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2010년 취득세 등'이라 한다).

3) 한편, [redacted]구 B, C, D 토지들의 지목은 2012. 9. 21.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redacted]구 B 대 281㎡에 나머지 토지들이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redacted]구 B 대 506㎡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나. 2012년 취득세 등 신고·납부 경위

1)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020호로 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규정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50% 경감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12. 9. 24. 50%가 경감된 취득세 45,733,730원, 지방교육세 4,989,130원, 농어촌특별세 2,078,810원을 납부하였고(이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2012년 취득세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9. 27.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라. 2013년 취득세 등 부과 경위

피고는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5,985,23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취득세 등을 '2013년 취득세 등'이라 한다).

마. 원고의 경정 청구 및 피고의 결과 통지

1)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원고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인정한 2014. 1. 20.자 조세심판결정(조심 2013지0685)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취득세 등, 2012년 취득세 등, 2013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2)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등급 외 일반입소자 다수가 장기간에 걸쳐 입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5.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외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2010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피고는 2010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0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경정청구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2010년 취득세 등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2010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2010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2010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2014. 2. 26.자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0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2013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피고는 2013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취득세 등(각 가산세 제외)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13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2013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2013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2014. 2. 26.자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020호로 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가)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유료 노인요양시설이나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은 2007. 8. 3.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본문 각 호와 위 조례 규정을 흡수하여 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이라 한다)는 여전히 노인복지시설이 유료 시설인지 무료 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달리 정하였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경과를 고려하면,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감면 규정은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개념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 제3호을 종합해 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 중 이러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다) 이 사건 감면 규정은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용을 입소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가 아닌 자를 일부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시설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고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감면 규정이 2015. 12. 2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서 ①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②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위와 같은 개정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규정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한 2012년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시설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시설은 입소자의 90% 이상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장기요양급여수급자들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대상 비용만을 수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대상 비용의 수준은 이 사건 시설의 위치,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상급병실료, 당진시가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 부담한 비급여대상 비용을 고려하면 과다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에도 이 사건 시설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들을 입소시켜 그들에게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이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이 사건 시설에 머문 노인들과 이 사건 시설의 입소자를 돌보기 위하여 들어온 노인 배우자 1명 외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노인을 입소시킨 적이 없는데, 이처럼 이 사건 시설을 유료로 이용한 사례는 일시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2013년 이용자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비율은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을 넘어선다.

나. 이 사건 감면 규정상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의미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본문, 제2호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여기서 취득세 면제 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①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입소자인 노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전부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위와 같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통상적인 실비 범위 내의 비급여대상 비용과 본인부담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문언은 '(입소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다.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도 취득세 중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혜택이 부여되는데, 이러한 취득세 경감만으로도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조세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면요건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취득세 면제의 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의미를 문언적 의미보다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은 ① '노인/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제1호)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제4호)로, ②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실비노인요양시설(제2호)로, ③ '노인/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유료노인요양시설(제3호)이나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제5호)로 각각 규정하였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도가 시행되자 위 규정은 2007. 8. 3.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8. 4. 4.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본문 각 호는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본문 각 호와 위 조례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이라 한다)는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이면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이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감면 규정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무료(또는 실비) 시설인지 아니면 유료 시설인지에 따라 달리 정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규정을 이어받아 제정되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입법 연혁을 고려하면,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분류를 참고하여 취득세 감면 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규정된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도 입소자들에게 문언 그대로 무료이거나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4가 신설된 취지는 취득세 면제의 요건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입소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 사람이 차지하는 일정한 비율로 한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637호, 2015. 12. 29.)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부칙(제26837호, 2015. 12. 31.)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위 규정들은 법령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게 되므로, 현행 규정은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을 세운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감면 규정상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마) 만약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 입소자가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통상적인 실비의 범위를 벗어난 고액의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용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 해당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 취득세 등의 면제 여부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0, 12, 13, 18, 1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 입소 대상자를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적인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부양가족의 사정(여행, 휴가,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의 2015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수급자 및 등급외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2015 운영규정'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의 경우 이 사건 시설의 월 이용료가 217만 원(= 일일금액 7만 원 × 3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입소안내' 부분에는 '입소대상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시설급여자)',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일반 어르신'이 열거되어 있다.

마) 2012. 10. 22.부터 2015. 5. 5.까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174명이고, 그 중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입소자가 13명이다. 위 13명 중 H은 2013. 6. 6.부터 2014. 4. 15.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요양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I의 배우자이고, J는 2015. 6. 10. 3등급의 수급자로, K은 2015. 6. 27. 4등급의 수급자로 각각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등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면서 '부양가족의 사정(여행, 휴가,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즉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노인도 별도의 이용료를 받고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도 이 사건 시설의 입소 대상인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에서 일반 노인에게 요양 등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일부로 하면서 일반 노인이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그로부터 지급받을 이용료를 미리 정해 두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다) 실제 2012. 10. 22.부터 2015. 5. 5.까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174명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 받지 않은 노인이 13명이고, 2013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노인의 수를 환산하면 월 평균 3.8명에 달한다. 원고는 이들로부터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데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위 13명 중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배우자이거나 입소 이후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 받은 노인들을 제외한 10명은 짧게는 4일부터 길게는 6달여 동안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였는데, 이들에게 부양자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들이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한 기간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와 같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지 않은 노인들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노인들을 일단 수용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시설에서 요양 등을 제공받은 데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유료 시설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12년 취득세 등은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2012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이 사건 소 중 2010년 취득세 등과 2013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012년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별지

목록

순번	세목	납부일/부과일	세액(원)
1	등록세(토지)	2010. 4. 8. 납부	50,572,500
	지방교육세		10,114,500
	농어촌특별세		10,114,500
2	취득세(토지)	2010. 5. 3. 납부	16,857,500
	농어촌특별세		5,057,250
3	취득세(건물)	2012. 9. 24. 납부	45,733,730
	지방교육세		4,989,130
	농어촌특별세		2,078,810
4	취득세(지목변경)	2013. 7. 8. 부과	4,019,000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93,160
	농어촌특별세		401,900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28,930
5	취득세(본점용토지분)	2013. 7. 8. 부과	142,640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9,980
	농어촌특별세		14,260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1,140
6	취득세(본점용건물분)	2013. 7. 8. 부과	175,900
	가산세		49,320
	농어촌특별세		17,590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1,41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감면 규정의 연혁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020호로 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12. 30. 서울특별시조례 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내용도 위와 동일하다.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칙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부칙 <제26837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구 노인복지법(2013. 6. 4. 법률 제11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608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부칙 <제8403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9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끝.